

아리아리! 정선
the mecca of arirang, jeongseon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348호 2015. 2. 17. (수)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5-116호 정선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 예고 1
- 정선군 공고 제2015-118호 북실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 14
- 정선군 공고 제2015-121호 201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목책기, 그물망) 설치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 20
- 정선군 공고 제2015-128호 2015년 강원도 「마을기업」 육성 사업 공모 32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4, FAX:560-2592)

공 고

정선군공고 제2015-116호

정선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정선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0일

정 선 군 수

1. 조 례 명 : 정선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군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반영과 알기쉬운 법령으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개정 주요내용

-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정함 (안 제2조)
-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 활동에 지원사항을 정함 (안 제4조)
- 정선군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정선군 군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정함 (안 제5조)
-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방법과 수행하는 업무를 정함 (안 제7조, 제8조)
- 도시재생활성화 지역별 도시재생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환수 규정을 정함 (안 제11조, 제12조)
-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대한 건축규제 등의 완화 적용범위를 정함 (안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 연락처 : 전화 033-560-2132, FAX 033-560-2596

붙 임 : 정선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정선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정선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3조(주민의 참여)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선군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같은 조 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정선군계획위원회에서 해당 기능을 대신한다.

제6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구성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로 정한다.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1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정선군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협의체 등과의 계획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업무를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 및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법인, 단체 등에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호에서 정한 것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 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평가) 군수는 관할 구역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등으로 해당 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사업의 시행자
2. 민간기업
3. 상공회의소
4.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5. 공공기관 및 행정기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

1.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2. 해당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 요청과 그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3. 이견과 갈등 조정

③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의장은 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1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금액의 환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3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

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에서 정한 범위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전담조직의 설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지원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 기관·부서 간 협의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와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지표의 조사·관리

-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사업의 총괄·조정·관리·지원
- 3. 관계 기관,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교류
- 4. 지역 협업체제의 구축·운영
- 5. 도시재생 관련 국고보조금 등의 관리
- 6. 마을기업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추진
- 7.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사업 평가 및 점검
- 8. 재원 조달 및 관리
- 9. 그 밖에 도시재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3.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 4.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6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① 도시재생사업 중 다른 법률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 1. 지방자치단체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토지 소유자
- 5.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

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제2조제7호각 목의 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제27조(보조 또는 용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

-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비
- 2.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 3. 건축물 개수·보수 및 정비 비용
- 4. 전문가 파견·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5.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6.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7.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8.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9.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제24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의 규모·비율 등을 달리 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회계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

제3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 최대한도의 예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주택법」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건축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높이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2.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관장·세탁장 등 공동작업장, 화장실 및 수도
3. 어린이집·경로당 등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4. 마을방송국·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10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25명 이상 30명 이내
 2.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20명 이상 25명 이내
 3. 제2호에 따른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 또는 구: 15명 이상 25명 이내
-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원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 ⑤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지방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⑦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⑧ 지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⑨ 지방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⑩ 지방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지원 및 승인, 시·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조정 등 업무와 관련된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

할 수 있다.

-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9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 지원
- 2. 지방위원회의 운영지원
- 3.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제14조(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및 승인, 시·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조정 등 업무와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등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한다.

- 1.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방식, 인적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 2.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제3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5.1.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77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

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이상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삭제 <2014.1.14.>

나. 삭제 <2014.1.14.>

2.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3.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5.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

니 된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차대수 300대의 규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1.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
2. 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와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부지가 너비 12미터 이하인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 도로의 맞은편 토지(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도로의 건너편에 있는 시설물 정면의 필지와 그 좌우에 위치한 필지를 말한다)에 부설주차장을 그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 ②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 해당 시설물이 있는 동·리(행정동·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시설물과의 통행 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리

정선군 공고 제2015-118호

북실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북실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가 확정되어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2. 10.

정 선 군 수

- 1. 공고기간 : 2015. 2. 10. ~ 2015. 2. 23. (14일간)
- 2. 사업명 : 북실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 3. 사업기간 : 2013. 3. 20. ~ 2015. 2. 9.
- 4. 토지소재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620-2번지 일원
- 5. 종전 및 확정 토지 조서 : 『붙임 1』
- 6. 조정금 조서 : 『붙임 2』
- 7. 관계서류의 열람
 - 가. 관계서류 :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경계점표지등록부,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 등
 - 나. 열람기간 : 2015. 2. 10. ~ 2015. 2.23.
 - 다. 열람장소 : 정선군청 민원봉사과

- 붙임 1. 종전 및 확정 토지 조서 1부.
 2.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정금 조서 1부. 끝.

종전 및 확정 토지 조서														
번호	토지소재지			종전토지			확정된 토지					소유자		비고
	군	읍·면	리	지번	지목	면적(m ²)	지번	지목	면적(m ²)	증가한 면적(m ²)	감소한 면적(m ²)	주소	성명	
합 계				98 필지		47,653	114 필지		47,531.6					
1	정선	정선	북실	620-2	도로	369	620-2	도로	369.1	0.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고*주	
2	"	"	"	620-11	도로	24	620-11	도로	24.0					
3	"	"	"	620-14	도로	8	620-14	도로	8.0					
4	"	"	"	620-19	도로	1	620-19	도로	1.0					
5	"	"	"	620-20	도로	1	620-20	도로	1.0					
6	"	"	"	620-5	대	205	620-5	대	205.0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김*자	
							620-23	대	16.2	16.2				
7	"	"	"	701-17	대	606	701-17	대	606.0					
8	"	"	"	701-20	전	38	701-20	전	38.0					
9	"	"	"	702-3	전	576	702-3	전	576.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김*진	
10	"	"	"	703-7	대	601	703-7	대	601.0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김*자	
11	"	"	"	703-8	대	962	703-8	대	962.0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김*규	
12	"	"	"	757-16	대	80	757-16	대	80.0					
13	"	"	"	702-4	전	441	702-4	전	441.0			서울시 성동구 구의동	김*동	
14	"	"	"	701-19	대	460	701-19	대	334.2		125.8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김*순	
							701-42	대	117.2	117.2				
15	"	"	"	702-5	전	447	702-5	전	447.0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김*열	
16	"	"	"	618-8	대	933	618-8	대	933.0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김*주	
17	"	"	"	618-17	대	60	618-17	대	60.0					
18	"	"	"	618	전	2,235	618	전	2,221.6		13.4	경북 영일군 연일읍 동문동	남*기	
19	"	"	"	618-16	전	275	618-16	전	288.4	13.4				
20	"	"	"	758	묘지	337	758	묘지	247.4		89.6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남*경	
							758-2	묘지	89.6	89.6				
21	"	"	"	703-17	대	571	703-17	대	571.0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서*욱	
22	"	"	"	703-18	전	300	703-18	전	300.0					

49	"	"	"	703-1	전	2,521	703-1	전	2,084.9		436.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전*범 외1	공유
							703-36	전	39.0	39.0				
							703-40	전	397.1	397.1				
50	"	"	"	757-3	대	1,493	757-3	대	1,493.0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	주*근 외2	공유
51	"	"	"	757-5	대	1,207	757-5	대	1,180.6		26.4			
52	"	"	"	757-7	대	1,555	757-7	대	1,598.6	43.6				
53	"	"	"	757-25	대	71	757-25	대	62.5		8.5			
54	"	"	"	757-26	대	82	757-26	대	73.3		8.7			
55	"	"	"	701-24	대	2,371	701-24	대	2,371.0					
56	"	"	"	701-26	잡종지	270	701-26	잡종지	270.0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용담길	이*순 외3	공유
57	"	"	"	701-39	대	9	701-39	대	9.0					
58	"	"	"	702-2	전	654	702-2	전	644.9		9.1			
							702-7	전	9.1	9.1				
59	"	"	"	702	대	578	702	대	528.9		49.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함*화	
60	"	"	"	757-23	대	330	757-23	대	379.1	49.1				
61	"	"	"	759	대	775	759	대	775.0				태**라	
62	"	"	"	704-1	도로	850	704-1	도로	893.3	43.3			국(국토 교통부)	
63	"	"	"	704-2	도로	96	704-2	도로	144.8	48.8				
64	"	"	"	618-3	대	92	618-3	대	92.0				국국제청	
65	"	"	"	618-5	대	109	618-5	대	101.5		7.5		국(기획 재정부)	
66	"	"	"	618-6	전	83	618-6	전	72.0		11.0			
67	"	"	"	618-7	대	139	618-7	대	40.1		98.9			
68	"	"	"	618-11	전	70	618-11	전	27.9		42.1			
69	"	"	"	618-12	전	1	618-12	전	164.7	163.7				
70	"	"	"	618-9	제방	600	618-9	제방	562.7		37.3			
71	"	"	"	619-2	도로	63	619-2	도로	68.5	5.5		국(국토 교통부)		
72	"	"	"	701-4	도로	1,814	701-4	도로	1,785.8		28.2			
	"	"	"				701-41	도로	180.2	180.2				
73	"	"	"	703-33	도로	259	703-33	도로	258.3		0.7			

조 정 금 조 서															
지 구 명 : 북 실 2 지 구															
토지소재지: 정 선 군 정 선 읍 북 실 리															
번호	종전 토지			확정된 토지			지분	㎡당 가격 (원)	조정내역				소유자		비 고
	지번	지 목	면적 (㎡)	지번	지목	면적 (㎡)			증		감		주소	성명	
									면적 (㎡)	금액(원)	면적 (㎡)	금액(원)			
1				620-23	대	16.2		256,000	16.2	4,147,200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김*자	
계	징 수 금 액									4,147,200					
2	701-19	대	460	701-19	대	334.2		302,500			125.8	38,054,500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김*순	
				701-42	대	117.2		302,500	117.2	35,453,000					
계	지 급 금 액										8.6	2,601,500			
3	757-6	전	822	757-6	전	802.0	1/2	332,000			20.0	6,640,000	강원도 태백시	이*수	
계	지 급 금 액										10.0	3,320,000			
4	757-6	전	822	757-6	전	802.0	1/2	332,000			20.0	6,640,000	강원도 태백시	손*주	
계	지 급 금 액										10.0	3,320,000			
5	757-29	전	918	757-29	전	937.7		332,000	19.7	6,540,400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신*국	
계	징 수 금 액									6,540,400					

정선군 공고 제 2015-121호

201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목책기, 그물망) 설치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하고자 추진되는 2015년도 정선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목책기, 그물망) 설치 보조사업 시공자 선정을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2. .

정 선 군 수

I. 목 적

- 가. 야생동물 퇴치시스템(목책기 등)은 여러가지 제품으로 가격 차이가 많이 발생되기에 규격 등을 통일하여 최상의 제품을 선정하여 농가에 보급 하고자 함.
나. 재정상태, A/S조직도 등 안정된 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II. 사업내용

- 가. 설치지원 시설명 : 태양식 목책기(3단 또는 4단), 그물망
나. 가구당 지원 규모 : 면적 1ha(3,000평,10,000㎡), 길이 500m
다. 사업비 보조비율 : 보조금 60%, 자부담 40%
라. 추진(시공) 업체 선정 : 공모에 의거 2~3개 업체 선정
마. 단가산정
○ 단가 산정 규모 : 면적 1ha(3,000평,10,000㎡), 길이 500m
○ 단가산정 방법
- 사업 참여 업체의 2014년 단가 기준 최고, 최저가를 제외한 평균으로 산정하되 재질, 사양을 고려하여 산정
○ 단가산정을 위한 시설 구성
- 기본시설 : 고압발생기(모델명) 접지봉, 접지선, 본체 거치대등
- 추가시설 : 지주대, 지주대 캡, 스프링 애자, 와이어, 주의표지판, 출입문(규격)등 기재
※ 그물망은 제품의 재질 및 가격 등을 검토하여 선정

바. 사업대상 농가 선정 : 정선군에서 읍·면을 통하여 선정

사. 계약체결 : 선정 업체가 농가와 계약

아. 시공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자. 사업비 정산

- 공사계약서와 자부담비 입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시 현장 확인 후 보조금 지급(연 2~3회 일괄 지급)

차. 선정된 업체는 5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 준공한 날로부터 1년은 업체 그 이후 농가에서 부담

카. 선정된 업체는 정부지원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각서 제출

III. 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15. 02. 11. ~ 02. 27.까지

나. 사업참여 접수일 : 2015. 03. 03.(14:00 ~ 18:00)

다. 접수장소 : 정선군청 환경산림과 환경관리팀

라. 접수방법 : 방문 접수

IV. 사업자 선정 조건

가. 직접생산 및 시공(공장등록)하는 업체 위주로 선정

나. 사업참여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업능력, 전문성, 연속성 등을 검토 선정

- 공장등록을 하였으며, 제품을 생산하는 증명서 제출(사출기등)
- 전기안전규격 인증서등 제출
- A/S팀 구성현황 제출
- 특허등록증 등 제출

다. 2014년 설치시설 단가에 가깝게 제출한 업체 우선

(2014년 태양식 3단 목책기 500M 단가 : 1,780천원)

※ 4단 목책기는 제출된 사양과 단가를 고려하여 선정

라. 최저가, 최고가로 제출된 업체는 선정 제외

마. 동일가격이 제출될 경우 직접생산 및 시공하는 업체 중 자체생산실적, 조직도, 경영상태 등으로 검토

V. 제출서류

가.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참여 신청서 (붙임 1)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4대보험 확인서, 특허증, 인/허가 증명서, 인증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실적증명서(최근 5년)

나. 산출내역서 (붙임 2) --- 3단, 4단 목책기 각각 제출

- 태양전지식(축전지)에 대한 제품으로 작성한다.
- 기본 및 추가시설에 대한 내용변경 불가 단, 동급이상의 제품을 증명 할 수 있을 경

우 변경가능 (증명자료 제출).

- 목책기 규격, 배터리(명기) 박스 등은 규격(mm), 재질명시
 . 예시 : 200(W)*200(H)*130(D)(목책기)/200(W)*150(H)*125(D)(배터리)

다. 회사 조직표 (붙임 3)

- 사업 책임자(대표자)에 밑에 최소 2 ~ 3개팀으로 구성
- 연구(기술)분야, 생산분야, A/S등 분야별로 성명, 인원 작성
 ※ 참고 자료로 회사의 실정에 맞게 작성
- 회사 조직표에 명시된 직원은 4대보험료(재직증명서)등 제출

라. 재정상태 건실도 (붙임 4)

- 회사의 재정상태등 확인위해 제출하는 서류
- 부실업체 방지를 하기 위함

마. 서약서 (붙임 5)

- 본 제품선정에 대한 취지목적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업체선정 후 이의제기를 하지 못함

바. 기타사항

- 본 제품을 선정하는데 대하여 구비서류 부족으로 업체에 부득이 한 사항이 발생되어도 이의제기를 하지 못함.
- 농가에서 시설 설치에 납득할 만한 사유로 이의를 제기를 할 경우에는 타업체와 직접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수 있음.
- 붙임 문서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유서 제출
- 참가하는 회사는 군에서 제시한 명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재질등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함.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정선군 환경산림과 033)560-2345로 문의

붙임 1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참여 신청서

업 체 명		대표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사업장 주 소			전화번호 (e-mail)		
회사설립일			자 본 금		백만원
직업현황 (총인원)			공 장 등록번호		
지적재산권	특허 제00-000000		제 품 생산유무		직접생산 (), 시장구매 ()
인·허가등록			인·허가번호		
기타인증					
사업실적	최근 5년이내 사업추진 실적 및 A/S실적				

(참여시설명) : 태양식 전기울타리

상기와 같이 2015년도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사업에 참여를 신청 합니다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4대보험 확인서, 특허증, 인/허가 증명서, 인증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실적증명서(최근 5년이내) **제품건본 제출**

2015. . .

업소명 :

대표자 :

(인)

정선군수 귀하

붙임 2

산출내역서

울타리 둘레길이 : 500 M

구분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원)	금액 (원)	비고
기 본 시 설	고압발생기 (본체)	태양전지식(축전지) 집진판 9 inch 이상 (12V,12A이상)	SET	1			
	접지봉	Ø12 x 30Cm	EA	3			
	접지선	본체 사양별	SET	1			
	본체 거치대	본체 사양별	EA	1			
	① 소계						
추 가 시 설	지주대 재질 (FRP, 아연강관)	Ø25 x 1.5m	EA	125			
	지주대 캡	Ø25 x 10mm	EA	125			
	(스프링, 절연) 애자	Ø25 x 40mm	EA	375			
	목책선(아연강선, 폴리와이어)	Ø1.6mm(아연)이상 Ø3.2mm(폴리)이상	m	1,500			
	장력 스프링 (재질 명기)	Ø25 x 150mm	EA	24			
	출입문 (스프링or핸들)	손잡이+스프링+연결크립 GATE HANDLE	EA	3			
	주의표지판 (코팅)	환경부 규격	EA	17			
	② 소계						
	③ 인건비,경비	유류대, 식대	인				
합 계(1+2+3)							

※ 제품의 규격 및 수량은 동급 이상이면 변경가능

※ 인건비 : 단가금액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 3단, 4단 각각 제출

붙임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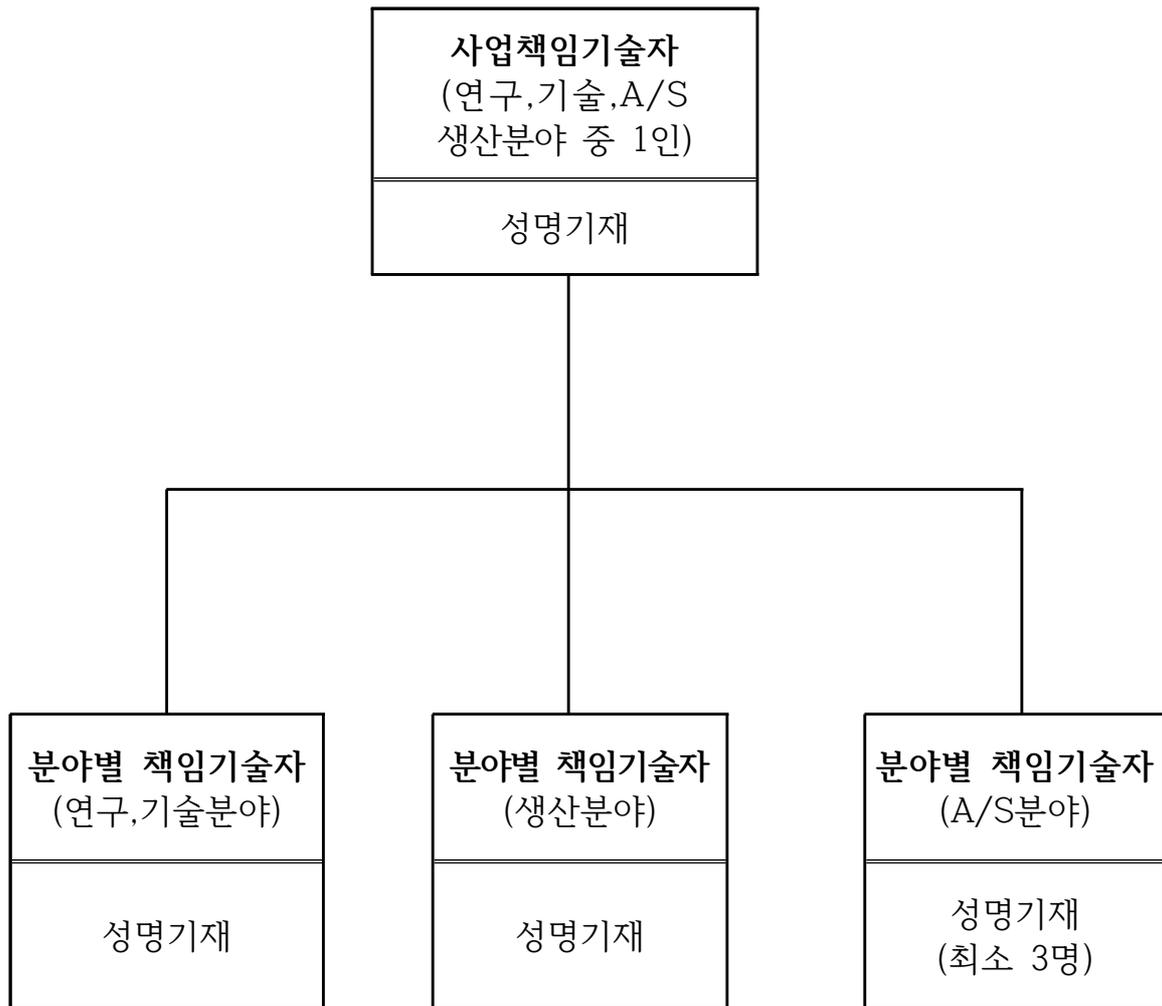
산출내역서 (그물망)

※ 울타리 둘레길이 : 500 M

구분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원)	금액 (원)	비고
기 본 시 설							
	① 소계						
추 가 시 설							
	② 소계						
③ 인건비, 경비		유류대, 식대	인				
합 계(1+2+3)							

붙임 3

회사 조직표(예시)



※ 회사 조직표에 명시된 직원은 4대보험 납부증명서 첨부

붙임 4. 재정상태 건실도

(단위 : 백만원)

참가자명			
주소			
설립년도		등록번호	
년도	년		비고
자기자본			
총자산			
유동자산			
부채			
고정부채			
유동부채			
매출액			
당기순이익			
자기자본비율 =	$\frac{\text{자기자본}}{\text{총자산}}$		
유동비율 =	$\frac{\text{유동자산}}{\text{유동부채}}$		
매출액순이익율 =	$\frac{\text{당기순이익}}{\text{매출액}}$		
총자산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총자산}}$		

주)1. 재정상태는 참여업체의 최근년도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 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최근년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주)2. 신규·합병·분할사업 양수도를 한 용역업자는 다음 각목의 해당 증빙서류 첨부

- 신규사업자 : 최초결산서
-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 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 등기일 또는 신고 수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붙임 5.

서 약 서

정선군에서 시행하는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할 뿐 아니라 공개적이며 합리적인 업체선정에 동의하므로 성실히 임하고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5.

서 약 서

정선군에서 시행하는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할 뿐 아니라 공개적이며 합리적인 업체선정에 동의하므로 성실히 임하고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5년 03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정선군수 귀하

별첨 1

보조금 지불 위임장 및 협약서

농가명	설치위치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원)		
				계	보조금	자부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전기충격식 목책기 (- m)			

상기 사업 추진결과 아래 보조사업자가 수령하여야 하는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의 대금 지불에 편의를 도모하고, 명확성을 기하고자 청구 및 수령에 관한 권한 일체를 공급업체에 위임하기로 하고 보조기관은 보조금을 수입자에게 지급할 것을 상호간에 협약합니다.

【위임자 : 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수입자 : 공급업체】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인)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보 조 기 관】

정 선 군 수 (인)

붙임 : 위임자, 수입자 인감증명서 각1부.

정선군수 귀하

별첨 2



정선군
JEONGSEON COUNTY

< 관리번호 2015 -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자 :
연락처 :

이 시설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물로 무단훼손 또는 철거를 금합니다.

2015년 월 일

정 선 군 수

↑
400mm
↓

← 540mm →

견적가 : 8만원 ~10만원 내외

※ 크기 : 400mm×540mm

※ 안내판 재질 : 아크릴 재질(글자는 변형이 되지 않도록 실사 등으로 인쇄)

※ 지주대 : 약천후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지지대 설치

※ 야생동물 퇴치기 설치에 참여하는 회사는 의무적으로 농가에 보급하여야 한다.

2015년 정선군 야생동물 퇴치기 설치
(목책기, 그물망) 서류접수 대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업체현황			서명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 제출한 업체는 공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서류등 미비로 인하여 대상에서 제외를 하여도 이의제기 하지 않기에 서명 합니다.

정선군 공고 제2015-128호

2015년 강원도 「마을기업」 육성 사업 공모

2015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참여 희망 마을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15. 2. .

정 선 군 수

1. 공모개요

가. 신규 마을기업

구 분	세부내용	비고
공모 및 접수기간	2015. 2. 11 ~ 2. 25	
공모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기업 신청업체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민법에 의한 법인,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회사 등 법인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마을기업 신청가능, 약정체결 전까지 법인설립 완료 2. 모든 회원은 출자를 해야 함 3. 최소 5명 이상의 지역주민이 출자해야 하며, 회원이 6명이상인 경우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범위 : “군”지역은 거주지 “읍면”단위, “시”지역은 거주지 “시”단위 4.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이수한 단체 ○ 마을기업 유형 : 별첨 	
지원범위	○. 업체당 50백만원 범위내	
접수처	○ 정선군청 지역경제과(560-2150)	

나. 2차년도 마을기업

구 분	세부내용	비고
공모 및 접수기간	2015. 2. 11 ~ 2. 25	
공모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신규 마을기업 중 2차년도 미지원 마을기업 ○ 2014년 신규 마을기업 중 신청일기준으로 약정체결 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마을기업 * 2014. 10월 지정 마을기업 신청 불가 	
지원범위	○. 업체당 30백만원 범위내	
접수처	○ 정선군청 지역경제과(560-2150)	

2. 제출서류

신규	2차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을기업 사업신청서 2.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3. 마을기업 현황 4. 마을기업 회원 명단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을기업 사업신청서 2.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3. 마을기업 현황 4. 마을기업 회원 명단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6. 마을기업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 - 2013년 : '13년 정산보고서 및 '14년 실적보고서

3. 유의사항

- 가. 정보화 마을,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농촌공동체회사 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 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함
- 나. 마을기업은 그 정체성 유지를 위해 타 정부지원 보조사업으로의 전환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시·군 및 도를 거쳐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야 함

4. 문의사항 : 정선군 지역경제과(☎ 560-2150)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033-749-3356~8)

<별첨 : 마을기업 유형(예시)>

마을기업 유 형	유형설명
전통식품	장류, 떡류, 주류, 전통두부 등 전통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
일반식품	전통식품을 제외한 식품(먹거리)과 관련한 모든 분야를 말함 (생산, 제조, 판매, 가공, 포장)
관광체험	관광 또는 체험사업을 주로하는 경우(관광내 체험 또는 먹거리 사업 포함)
의류신발	원자재를 구입하여 의복류 및 신발류를 생산, 판매 등을 하는 경우
공예품	도지기, 짚풀, 옥, 바느질공예 등 공예품을 제작 판매하는 경우
재활용	폐자원(폐의류, 폐가전제품, 고철 등) 등을 활용하여 재가공, 재유통, 재생산하는 경우
에너지	저탄소에너지, 퇴비 등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등을 생산하는 경우
문화예술	문화, 예술 등에 해당하는 전통행사, 축제, 공연, 놀이 등을 하는 경우
물류배송	물류를 배송 또는 운반하는 종류의 서비스만을 하는 경우
사회복지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 등을 하는 경우
교육	교육분야의 서비스 또는 사업을 하는 경우
유통기업	유통형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마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다른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서식 2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1. 신청사업명 :

2. 필요성 및 배경

-
-

3. 사업개요

- 사업명 :
- 사업장 소재지 :
- 추진주체 :
- 사업내용 :

-
-

- 소요예산액 :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 지역 일자리 창출 수 :
- 수익금 활용계획
- 공동체 운영계획
예시) 월 00회 총회, 월 00회 임원회의 등

4. 세부사업 추진계획

-
-

5. 지역사회 공헌 방안

-

○

6. 기대효과

○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중심으로 기술

○

7. 예산 계획

○ 예산 총괄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산출근거)
		계	보조금	자부담	
계					

○ 세부사업별 예산 계획 * 예산총괄의 세부사업별로 전부작성

①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신청금액 산출근거	
기대효과	
추진일정	1)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8. 3년간 수입 및 지출계획서(신규/2차년도 지원부터 3년간)

○ 2015년도(작성예)

구분	판매제품 목록	금액추계	산출내역 (단위:원)		비고 (산출근거)
			단가	수량(개)	
매출액 (수입 A)	매출액(수입) 합계	61,000,000			
영업 비용 (지출 B)	영업비용(지출) 합계	57,500,000			
순이익	A - B	3,500,000			

○ 2016년도(작성예)

구분	판매제품 목록	금액추계	산출내역 (단위:원)		비고 (산출근거)
			단가	수량(개)	
매출액 (수입 A)	매출액(수입) 합계	61,000,000			
영업 비용 (지출 B)	영업비용(지출) 합계	57,500,000			
순이익	A - B	3,500,000			

○ 2017년도(작성예)

구분	판매제품 목록	금액추계	산출내역 (단위:원)		비고 (산출근거)
			단가	수량(개)	
매출액 (수입 A)	매출액(수입) 합계	61,000,000			
영업 비용 (지출 B)	영업비용(지출) 합계	57,500,000			
순이익	A - B	3,500,000			

9. 일반현황

○ 사업장 위치도(관련사진)

--	--

○ 단체 활동사항 및 특징

- ▶ 활동사항 :
- ▶ 특 징 :
- ▶ 지역기업과 연계 등 기존유통망 :

서식 4

마을기업 실적보고서

I. 사업개요(요약)

별 인 명		마을기업명	
사 업 명			
사업기간	2015. . . ~ 2015 . . .	사업장소	
사 업 비	총 . . . 천원	보 조 금	천원(%)
		자 부 담	천원(%)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 - -		
지역사회 공헌내용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자세하게 기술) - -		
교육참여 실적	○ (지자체, 지원기관 등에서 실시한 교육참여 실적을 기술) -		
추진실적 및 사업성과	○ (일자리 창출(상시근로자, 선택적 근로자 구분), 매출액 등 주요내용 포함) - - * 추진실적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사업시행 전과 시행 후로 비교분석 자료 첨부 (객관적 수치, 사진 등의 증빙자료제시 포함)		

II.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세부사업	사업계획	추진실적	사유

< 작성요령 >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개별 사업별로 상세히 추진실적을 작성

III. 사업추진성과

<작성요령>

-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자립경영 가능성, 일자리 창출 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지원기관, 지자체 등에서 실시한 교육참여 실적을 기술
- 언론보도 내용 스크랩, 사진자료 등 첨부

IV.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가급적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마을기업의 계획

V. 건의사항

VI.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량	비고
1	보고서	-----		
2	발간책자	-----		
3	프로그램			
4	포스터			
·	·			
·	·			

<자료유형>

- 보고서
- 발간책자
- CD, 카세트, 비디오테이프
- 뉴스레터, 리플렛,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 행사 사진첩, 행사 언론보도 자료 등

VII. 예산집행 실적

1. 총괄

구분	총사업비	지원금액(A)	지출금액(B)	잔액(A-B)
계				
보조금				
자부담				

2. 예산 세부집행 현황

사업항목별	총예산	집행금액			구체적 내역
		계	보조금	기타	
총계					

※ 최종결과보고서 보고시 VII 항목은 정산보고서로 대체 가능

VIII. 향후 추진계획

1. 사업추진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2. 사업추진 계획

사업명	추진일정	세부추진내용	소요예산
			계

※ 향후 추진될 주요 사업내용을 상세히 기입

년 월 일

법 인 명 (인)

대 표

관리책임자 (인)

서식 5

마을기업 현황

법 인 명				마을기업명			
대 표 자 명				실무책임자 (총무 등)			
사업장 소재지							
연 락 처	전 화			E- mail주소			
	홈페이지			F A X			
창립년월일	년 월 일			회 원 수	명		
설 립 형 태 (실정에 맞게 기재)	주식회사(), 협동조합(), 영 농조합() 기타(조직형태기재)			사무실규모 및 임대료	평(천원) (전세)		
조직(임원) ※ 회원, 출자자 명단 별첨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자 택 주 소	휴대폰	임기	
재 정 상 태 (단위 : 천원) ※ 없는경우미기재	연도별	투자액		매출	순수익		비고
	2013						
	2014						
공 동 자 산 (자 본)현 황 ※ 증빙자료 별첨	기 금 :		원				
	부동산 :		㎡				
	건 물 :		㎡				
	동 산 :		농기계, 차량, 등				
		기 타 :					

서식 6

마을기업 회원 명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출자금액 (원)	역할 (업무)	정보공 제동의 여부	대표자 와의 관계
1								
2								
3								
4								
5								
6								
7								
8								
9								
10								
합계								

※ 첨부 : 출자금 증빙자료 1부.

위와 같이 마을기업 회원 및 출자금액을 확인합니다.

2015. . .

신청자(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서식 7

2014년 마을기업육성사업 정산보고서

- 법 인 명 :
- 사 업 명 :
- 사 업 비 : 원(보조금 , 자부담)

법인명 (직인)

○ 실무책임자 :	직위	성명	
○ 연 락 처 :	전화	FAX	E-mail
○ 주 소 :	(우편번호)		

I. 사업비 집행현황

1. 정산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총사업비)(A)	집행액(B)	집행잔액(A-B)	비 고
계				
보조금				
자부담				

II. 보조금 집행 및 매출액 처리 현황

1. 지출일자별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 인출 일자(순)	인출액	지출내역								지출 결의 번호	비 고 (증빙서)	
		사업 (세부) 분야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 급 처
						계	공급가액	부가세	부가세 대체입금일			
계												
<작성예시> 2015-9-1	330,000	판로 개척	인쇄비	홍보 전단 제작	2014- 9-1	250,000	227,270	22,730	2015-9-30	B-09- 01-01	세금 계산서	
			사무 용품비	전산 인크 구매	2014- 9-1	60,000	54,540	5,460	“	B-09- 01-02	체크 카드	
			여비	시장 조사 여비	2014- 9-1	20,000	20,000	-		B-09- 01-03	출장 보고서	
<작성예시> 2015-9-3	500,000	제품 생산	재료비	배추 구매	2014- 9-3	500,000	500,000	-		A-09- 03-01	판매 확인증	

※ 작성방법

-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짜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 2) 지출내역은 사업(세부)분야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 3) 보조금 통장에서 부가가치세 집행 불가(수익금통장에서 월별 정산 등 대체입금 조치)

*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는 금액은 수익금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에서 집행한 경

우에는 수익금에서 사업비로 대체입금하여 반환하여야 함

4) 지출결의서 일련번호 부여

- 지출결의서(A-07-10-01): 단위사업별(A,B,C...), 월별(01,02,03...), 일자별(01,02,03...), 일련번호(01,02,03...)

5) 비고 : (세금)계산서, 체크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재료판매확인증, 출장결과 보고서 등 증빙서

2.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사유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비 목	예산액(A)	지출액(B)	집행잔액(A-B)	발생사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3. 매출액 현황

(단위 : 원)

총매출액 ('15. 0월~12월)	수익금						
	계(A+B)	투자금 적립(A)	집행액 (B)				
			소계	재투자	주민배당	지역공헌	기타

- 일시, 장소, 참여, 지원가액 등
-

Ⅲ. 자부담 집행 현황

1. 지출일자별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 인출 일자(순)	인출액	지출내역								지출 결의 번호	비고 (증빙서)	
		사업(세부 분야)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 처
						계	공급가액	부가세	부가세 대체 입금일			
계												
<작성예 시> 2015-9-5	470,000	관로개척	인쇄비	책자 제작	2015-9- 5	330,000	300,000	30,000	2015-9-30	B-09- 05-01	세금 계산서	
			사무 용품비	토너 구매	2015-9- 5	110,000	100,000	10,000	"	B-09- 05-02	체크 카드	
			여비	시장 조사 여비	2015-9- 5	30,000	30,000	-		B-09- 05-03	출장 보고서	
<작성예 시> 2015-9-8	300,000	제품생산	재료비	콩구 매	2015-9- 8	300,000	300,000	-		A-09- 08-01	판매 확인증	

- 1) 자부담 통장에서 부가가치세 집행 불가(수익금통장에서 월별 정산 등 대체입금 조치)
- 2) 비고 : (세금)계산서, 체크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재료판매 확인증, 출장결과보고서 등 증빙서

2. 자부담 집행 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비 목	예산액(A)	지출액(B)	집행잔액(A-B)	발생사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 잔액, 이자 등 기재

서식 9

【정보제공 동의 표준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인)
 대표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